



일자: 2020년 4월 26일
수신: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시설 및 지역 보건부
송신: 뉴욕주 보건부

임시 지침 갱신: 모든 의료 제공자 및 지역 보건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검사 프로토콜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진단 및 혈청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적

검사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다층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뉴욕주는 매일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뉴욕주가 가장 시급한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코로나19 진단 및/또는 혈청 검사를 승인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발열, 기침 및/또는 호흡 곤란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70세 이상이거나 면역계가 손상되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 또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과 밀접한(즉, 6피트 이내) 또는 근접한 접촉을 한 경우
- 예방 또는 필수 검역 대상인 경우
- 또는 의료서비스 노동자, 긴급상황 대처자 또는 근무 중 대중과 직접 상호 작용하는 기타 필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사실과 상황이 검사를 허락하고 치료 임상이가 주정부 및 지방 보건부 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한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임상적 요인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해야 할 적절한 코로나19 검사(진단 또는 혈청)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 우선순위 지정

2020년 4월 17일에 발행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19](#)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완료하도록 요청하는 단일한 주 전역의 조정된 검사 우선순위 지정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주 전역에서 조정된 검사 우선순위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명령할 때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입원 중인 사람을 포함해 특히 고위험군인 환자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양로원, 장기요양시설, 기타 집단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면역계가 손상된 사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70세 이상인 사람.
2. 코로나19 양성으로 알려진 사람과 밀접한(즉, 6피트 이내) 또는 근접하여 접촉한 사람.
3. 의료서비스 노동자, 긴급상황 대처자 또는 양로원, 장기요양시설 또는 기타 집단 요양 환경에서 근무하는 개인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교도관/가석방 심사관/보호 관찰관
 - 직접 관리 제공자
 - 소방관
 - 의료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보조 및 지원 직원(의사, 간호사, 공중보건 인력 등)
 - 의료 전문가
 - 영양학자 및 영양사
 - 직업/물리/레크리에이션/언어 치료사
 - 긴급의료원/응급 구조 대원(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 경찰관
 - 심리학자/정신과 의사
 - 거주형 관리 프로그램(Residential Care Program) 관리자
4. 대중과 직접 상호 작용하는 필수 직원으로 고용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
 - 동물 관리 노동자(수의사 등)
 - 자동차 서비스 및 수리 노동자
 - 은행 창구 직원 및 근로자
 - 건물 규정 집행관
 - 보육 종사자
 - 클라이언트 대면 케이스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 상담원(정신 건강, 중독, 청소년, 직업, 위기 등)
 - 배달 근로자
 -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
 - 점유 주택 또는 건물의 필수 건설 노동자
 - 신앙 기반 지도자(사제, 성직자 임원 등)
 - 보건 및 안전을 위한 현장 조사관/규제관
 - 식품 서비스 노동자
 - 장례식장 노동자
 - 호텔/모텔 노동자
 - 보건 서비스 제공자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노동자
 - 우편 및 발송 노동자
 - 유지 보수 및 관리/청소 노동자
 - 검안사, 안경사 및 보조 직원

- 필수 사업체의 소매 근로자(식료품점, 약국, 편의점, 주유소, 철물점 등)
- 경비원 및 보안요원
- 대피소 노동자 및 노숙자 지원 직원
- 사회복지사
- 교사/교수/교육자
- 운송 근로자(공항, 철도, 버스 및 임대 차량 등)
- 쓰레기 및 재활용 노동자
- 공공 근로자

진단 검사 이용

이 우선순위 범주에 해당하고 현재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은 뉴욕주 코로나19 핫라인 1-888-364-3065에 전화하시거나 뉴욕주 보건부 웹사이트 <https://covid19screening.health.ny.gov/>에 접속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뉴욕주 검사기관(State's Testing Sites) 중 한 곳과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모든 정보 공개는 의료보험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및 개인 건강 정보에 적용되는 기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제공자는 업무 시간에는 518-473-4439번으로 뉴욕주 보건부 전염병 통제국(Bureau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에 연락하거나, 저녁, 주말 및 공휴일에는 1-866-881-2809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

-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19 웹사이트](#)
- [뉴욕주 지역 보건부 디렉터리](#)
-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19 웹사이트](#)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코로나19 웹사이트](#)